

청주교육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

제정 2026. 6. 9. 규칙 제1690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3조의3에 따라 교육혁신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대학의 교육 혁신과 학교 교육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개발
2. 예비교사의 교수·학습 및 임용 역량 강화
3. 현직교사 및 교육전문가 대상 연수
4. AI·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양질화
5. 교육자료 및 교육 콘텐츠의 아카이브 구축 및 확산
6. 교육연구원, 교육연수원, 정보전산원, 학술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 혁신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3조(기구) ① 본부에는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부서를 둔다.

1. 교육연구원
2. 교육연수원
3. 학술문화원
4. 정보전산원

② 제1항 각 호의 부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직제) ① 본부에는 교육혁신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본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각 원의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본부장이 교육연구원장, 교육연수원장, 학술문화원장, 정보전산원장을 겸할 수 있다.

④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원의 팀장(급)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.

제5조(위임)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.

부 칙(제1690호, 2026. 6. 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